

□ 2021년 1차 노사협의회 안건

안건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일직 근무자의 대체 휴무를 보장함으로써 숙직자와의 형평성을 유지 하며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및 문제점<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직자인 여성 공무원 및 장학사는 일직 근무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휴무를 부여하여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을 만들 필요 있음○ 현재 경북도청에서는 2020. 12.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으로 일직자에 대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2020. 1. 2.]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타 시 · 도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8개 시 · 도교육청은 일 · 숙직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음○ 경상북도 자체 내 23개 시 · 군 중 현재 7개 시 · 군이 일직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 · 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노조 업무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조원의 78.9%가 일직 근무 후의 대체휴무를 찬성하고 있음

□ 개선방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안)]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과 일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2021년 경북교육노조 업무만족도 설문조사(조사기간:21. 3.8 ~ 19)
----	--

주관부서	총무과
------	-----

□ 불임: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및 설문자료
2. 타시도 관련자료

붙임 1 관련법령 및 설문자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설문조사 19번> 일직근무자(토, 일, 공휴일)들이 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에 적절한 처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9 (전체건수 : 1035, 관측건수 : 374, MISS 건수 : 0)		
5분 척도	빈도	백분율
1. 매우그렇지않다	15	4.0
2. 그렇지않다	22	5.9
3. 보통	42	11.2
4. 그렇다	101	27.0
5. 매우그렇다	194	51.9
TOTAL	374	100

붙임 2 타시도 관련자료

17개 시도교육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현황

연번	시도교육청명	숙직 대체휴무	일숙직 대체휴무	비고
1	서울시교육청			
2	부산시교육청	○	○	
3	대구시교육청			
4	인천시교육청	○	○	
5	광주시교육청	○	○	
6	대전시교육청	○	○	
7	울산시교육청	○	○	
8	세종시교육청	○	○	
9	경기도교육청	○	○	
10	강원도교육청	○	○	
11	충청북도교육청	○	○	
12	충청남도교육청	○		
13	전라북도교육청			
14	전라남도교육청			
15	경상북도교육청	○		
16	경상남도교육청			
17	제주도교육청	○		
계		12	9	

경북 시,군 지자체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현황

구 분		당직비 (단위 : 만원)			당직현황	일직 대체휴무	숙직 대체휴무	숙직 종료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비고
		본청- 평일 (당직종료일이토, 공휴일)							
연번	기관명	숙직	일직	숙직	남자만 /모두	여/부	여/부		
0	경북	6	6	6	남자	여	여	여	2020.1.2일조례개정
1	포항								
2	경주	6	6	6	모두	부	여	5일이내	
3	김천	5	6	6	남자	부	여	5일이내	일직 규칙개정 추진중
4	안동	6	6	6	모두	여	여	5일이내	
5	구미	6	6	6	모두	부	여	5일이내	일직 대체휴무 논의중
6	영주	6	6	6	남자	여	여	5일이내	
7	영천	6	6	6	남자	여	여	5일이내	당직 공휴일 토,공휴일 때 대체휴무
8	상주	5	5	5	남자	여	여	5일이내	당직비 2021년 6만원 인상계획 중
9	문경	6	6	6	남자	부	부		
10	경산	6	6	6	남자	여	여	5일이내	차량등록소업소:남자반원 일직근무
11	군위	5	5	5	남자	부	여(금, 토 제외)	X	본청 기준
12	의성	6	6	6	남자	부	여	5일이내	
13	청송	5	5	5	남자	부	여	5일이내	
14	영양	5	6	6	남자	부	여	X	일직 대체휴무 현재 조례 개정중 당직비일괄5만원규칙개정중
15	영덕	5	5	5	남자	부	여	5일이내	일직 당직 반장의 경우 여자 인원의 부족으로 남자도 배치 됨
16	청도	6	6	6	남자	부	여	5일이내	
17	고령	5	6	6	남자	부	여	5일이내	
18	성주	5	6	6	남자	여	여	5일이내	
19	칠곡	6	6	6	남자	부	여	5일이내	일직자 대체휴무 부여 건의 접수
20	예천	3	4	3	남자	부	여	5일이내	당직비 6만원
21	봉화	3	4	3	남자	여	여	5일이내	
22	울진	6	6	6	모두	부	여	5일이내	당직실 리모델링하여 남녀모두 근무
23	울릉	5	3	5	남자	부	여	5일이내	일직자 대체휴무 부여 건의 접수

안건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요구

주요내용	<p>□ 목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p> <p>□ 현황(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p>제18조(특별휴가) ⑧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 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연 3일 이내의 학습 휴가가 부여되나,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장학사(연구사)는 학습 휴가의 기회가 없어 차별이 발생함○ 본 복무조례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장학사 및 연구사도 지방공무원법 적용으로 기관학습휴가 사용 가능하게 됨※ 제2조(공무원의 구분) 2. 특정직공무원: <u>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u>○ 또한, 노조 업무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조원의 85.0%가 기관학습휴가를 찬성하고 있음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법 제8조○ 2021년 경북교육노조 업무만족도 설문조사(조사기간:21. 3. 8~19)
주관부서	총무과

□ 불임: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및 설문 자료

붙임 1 관련법령 및 설문 자료

-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특별휴가)⑧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 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
-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설문조사 20번>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에게 학습휴가 3일을 부여하는 것이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0 (전체건수 : 1035, 관측건수 : 374, MISS 건수 : 0)		
5분 척도	빈도	백분율
1. 매우그렇지않다	10	2.7
2. 그렇지않다	16	4.3
3. 보통	30	8.0
4. 그렇다	90	24.0
5. 매우그렇다	228	61.0
TOTAL	374	100

- 타 시·도교육청 기관학습휴가 시행 현황 -

연번	교육청명	기관학습휴가 일수	연번	교육청명	기관학습휴가 일수
1	대전광역시교육청	4일	10	울산광역시교육청	2일
2	경상남도교육청	2일	11	제주도교육청	2일
3	부산광역시교육청	4일	12	충청북도교육청	5일
4	서울특별시교육청	4일	13	세종특별자치교육청	4일
5	강원도교육청	5일	14	경기도교육청	미실시
6	인천광역시교육청	3일	15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실시
7	전라남도교육청	3일	16	대구광역시교육청	미실시
8	전라북도교육청	5일	17	경상북도교육청	미실시
9	충청남도교육청	5일			

* 현재 기관학습휴가 실시 기관: 13개 교육청, 미실시 기관: 4개 교육청

- 최근 세종·서울·부산광역시교육청은 기관학습휴가 2일→4일 확대,

세종특별자치교육청 4일, 울산광역시교육청 2일, 제주도교육청 2일, 충청북도교육청 5일

기관학습휴가 노사협의회 안건 통과 후 조례 개정 예정

- 타 시·도 교육청(13개 교육청)에서 기관학습휴가(76% 정도) 실시하므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최소한 3일의 기관학습휴가를 신설하여야 함

안건3. 지방공무원 6급 이하 장기교육훈련 과정 개설

주요내용	<p>□ 목적: 발 빠르게 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의 장기교육훈련 시행</p> <p>□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교육훈련은 5급에게는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교육훈련(2년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4급을 위해서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간부관리자과정 교육훈련 (1년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하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장기교육훈련의 기회조차 부여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미 시행에 대한 꾸준히 불만 제기																																											
	<p style="text-align: center;"><타 시 · 도교육청 장기교육훈련 시행 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명</p> <table border="1"><thead><tr><th></th><th>서울</th><th>제주</th><th>경기</th><th>충남</th><th>충북</th><th>세종</th><th>전남</th><th>광주</th><th>강원</th><th>대전</th></tr></thead><tbody><tr><td>상반기</td><td>40</td><td>4</td><td>0</td><td>18</td><td>5</td><td>4</td><td>25</td><td>10</td><td>20</td><td>0</td></tr><tr><td>하반기</td><td>40</td><td>4</td><td>40</td><td>18</td><td>5</td><td>4</td><td>25</td><td>10</td><td>20</td><td>3</td></tr><tr><td>계</td><td>80</td><td>8</td><td>40</td><td>36</td><td>10</td><td>8</td><td>50</td><td>20</td><td>40</td><td>3</td></tr></tbody></table> <p>□ 개선방안</p> <p>○ <u>지방공무원 6급 이하 장기교육훈련(6개월) 과정 개설</u></p> <p>※ 대구교육청과 협의하여 같이 공동 과정개설 요구</p> <p>※ 2019년 3분기 노사협의 안건 상정(추후검토): 장기교육훈련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 필요</p>		서울	제주	경기	충남	충북	세종	전남	광주	강원	대전	상반기	40	4	0	18	5	4	25	10	20	0	하반기	40	4	40	18	5	4	25	10	20	3	계	80	8	40	36	10	8	50	20	40
	서울	제주	경기	충남	충북	세종	전남	광주	강원	대전																																		
상반기	40	4	0	18	5	4	25	10	20	0																																		
하반기	40	4	40	18	5	4	25	10	20	3																																		
계	80	8	40	36	10	8	50	20	40	3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 19조(위탁교육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행정인 전문성 필요성에 관한 논문 및 연구보고서<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병대(2003).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p125-144※ 박두익 외(2018). 교육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경상북도교육행정 세움연구회 연구보고서(pp196~197)

주관부서	총무과
------	-----

□ 불임: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및 논문(연구보고서)
2. 경북교육노조 단체협약

붙임 1 관련법령 및 논문(연구 보고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 교육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4. 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5.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6. 교육훈련경비의 명세 및 교육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왜 지방공무원에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가?

1. 21세기 공무원의 전문성 지향점(최병대(2003: 129))



2. 교육행정 전문성 신장 모형(PSPS모형)



※ PP영역의 교육행정인

PP영역은 Profound-Progress영역으로 행정업무의 지식이 깊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이해도 진취적인 영역을 말한다. 이 영역에 있는 교육행정인은 새로운 업무가 주어 졌을 때 법규 확인, 사례 확인 등 적극 행정을 펼치며, 부처가 불명확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타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한 소통행정을 펼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학생 위주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여 창의적 기획력을 발휘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는 교육행정 전문성을 업무의 깊이와 방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pp196~197)

붙임 2 경북교육노조 단체협약

□ 참고자료

- 경북교육노조 단체협약 제23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안건] 4. 지방공무원(전산직렬) 위험근무수당 지급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현황(문제점)<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전산직)은 유압 전압 380볼트인 정보시스템을 조작·관리하는 등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전산직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통해 사기진작 및 형평성 도모 <u>*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대구교육청 등에서 지급하고 있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요청)<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전산직렬)에게 위험근무수당 지급○ 관련 법령(민법) 등에 따른 3년치 소급하여 지급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972호 (2020.8.25.))
----	---

주관부서	재무정보과
------	-------

불임: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붙임 1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972호 (2020.8.25.))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규정 [별표 7]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월 지 급 액
갑 종	60,000원
을 종	50,000원
병 종	40,000원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부문 등급	갑 종	을 종	병 종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차량 운전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 공무원 <u>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u>

[안건] 5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및 확대 요청

<p>주요내용</p>	<p>□ 목적: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중요직무급 수당지급으로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 대내외 협업 업무 및 격무 · 기피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및 직업 만족도 향상</p> <p>□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등이 높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u>정원의 15% 범위 내</u>) ※ 2021년 지급대상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0%에서 15%로 확대○ 선정기준: 기관 및 학교의 중점 추진과제, 대내 · 외 협업업무 및 격무 · 기피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 포함 <p>□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및 확대 요청○ 지급시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7월 1차 노사협의회 원안 수용안건(2021.1월 지급예정 협의) <u>- 코로나19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지급시기 조정을 이해하나 2021.7월 지급요청</u>○ 예산액: 월 100,000원 이내○ 지급대상 확대<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7월 1차 노사협의 원안 수용안건(나홀로 행정실장 및 3식 급식학교 조리사) <u>- 지역교육청 학교지원센터 근무자 지급요청</u> ☞ 교무실 업무경감을 위해 신설한 부서로 회피 · 기피 · 격무부서 업무로 중요직무 수당 지급하여 학교지원센터 근무자 사기진작- 점심시간 배달급식 운전직렬 지급요청 ☞ 학교급식 인원 감소로 학교 직영급식이 불가능하여 점심시간에 인근 학교 급식 배달하는 운전직렬 고충해소 및 사기 진작-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지급요청 ☞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공무원은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요청[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535(2021.4.1.)] <p>※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노조의 노사협의회 안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의 되었으며 원안 수용된 안건을 지연한다면 2020년도 노수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으로 우수한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노력이 물거품 되어 경상북도 교육청 대외이미지에 크나큰 손실이 예상되므로 협의사항 이행 요청함</p>
--------------------	---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9 제11호 차목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행정안전부 예규 102호 2020. 1. 22.)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535(021.4.1.))
-----------	---

주관부서	행정과
-------------	------------

붙임: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붙임 1 관리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11.특수 직 무 수당	차.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6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5퍼센트 범위 내)	1) 지급액: 월 10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

[안건] 6. 지방공무원 5급 정원 확대 및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조정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현황(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시 · 도교육청 중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u>집행률이 최저(83%)이며, 이로 인해 630억 집행 잔액이 발생(2020년 기준)</u>○ 총액인건비의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경북교육청이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인 인력운영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에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함.○ 그 방안으로 <u>5급 정원을 확대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임.</u> 이는 직급별 법정비율 상향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직업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초등학교 행정실 신규 업무의 파생, 공무직 및 병설유치원의 업무량의 확대로 초등학교 행정실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고충 해소 : 초등학교 8학급(55명 이상)- 17학급)에는 행정실 1명의 증 배치 필요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비율 및 직렬별 평균 아래인 5급 정원 확대														
<table border="1"><thead><tr><th>직렬</th><th>년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합계</th></tr></thead><tbody><tr><td>지방공무원</td><td>5</td><td>5</td><td>5</td><td>5</td><td>20</td><td></td></tr></tbody></table>		직렬	년도	2021	2022	2023	2024	합계	지방공무원	5	5	5	5	20	
직렬	년도	2021	2022	2023	2024	합계									
지방공무원	5	5	5	5	20										
<p>※ 5급 정원 비율: 교육행정 5.3%, 전산 4.5%, 사서 7.5%, 시설 6.7%, 공업 5.7%, 보건 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7.1.자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조정하여 행정실 1명 증 배치<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8학급(55명 이상) - 13학급 : 행정 6급 1명, <u>행정 8급 2명</u>,- 초등학교 14학급 - 17학급 :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u>행정8급 1명</u>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정원책정기준) - 별표 2
----	--

주관부서	행정과
------	-----

붙임 1 관련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정원책정기준) - 별표 2

직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전문경력관
법정비율 (정원조례)	2%	8.5%	33%	44%	12%이상	0.5%
경북교육청 정원비율	0.6%	<u>5.4%</u>	20.1%	34.8%	40.7%	0.2%
증감	-1.4%	<u>-3.1%</u>	-12.9%	-9.2%	+28.7%	-0.3%

○ 2021. 7. 1.자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행정(기술)직					시설 관리(B)	합계 (A+B)	
		5급	6급	7급	8급	소계(A)			
단설유치원	9학급 이하			1	1	2	1	3	
	10학급 이상		1		1	2	1	3	
	[감원] 운전원 배치 유치원				-	-1	-1		
초등학교	3학급 이하			1		1		1	
	4학급 ~ 7학급(50명 미만)			1	1	2		2	
	7학급(50명 이상) ~ 8학급(55명 미만)			1	1	2	1	3	
	8학급(55명 이상) ~ 13학급		1		1	2	1	3	
	14학급 ~ 17학급		1	1		2	1	3	
	18학급 ~ 26학급		1		2	3	1	4	
	27학급 ~ 36학급		1	1	1	3	1	4	
	37학급 ~ 45학급		1	1	2	4	1	5	
	46학급 이상	1	1	1	2	5	1	6	
	[증지] 병설유치원 4학급(85명) 이상				1	1		1	
중학교	3학급 이하			1		1		1	
	4학급 ~ 12학급		1	1		2	1	3	
	13학급 ~ 22학급		1	1	1	3	1	4	
	23학급 ~ 29학급		1	1	2	4	1	5	
	30학급 이상	1	1	1	1	4	1	5	
	초 · 중 통합교		1	1	1	3	1	4	
	기술형		1	1	1	3	2	5	
고등학교	일반고	5학급 이하		1	1		2	1	3
		6학급 ~ 17학급		1	1	1	3	1	4
		18학급 ~ 24학급	1	1	1	1	4	1	5
		25학급 이상	1	1	1	1	4	2	6
		12학급 이하		1	1	1	3	1	4
	특성화 고	13학급 ~ 19학급	1	1	1	1	4	1	5
		20학급 이상	1	1	1	1	4	2	6
		12학급 이하		1	1	1	3	1	4
	중 · 고 병설교	13학급 ~ 16학급	1	1	1	1	4	1	5
		17학급 ~ 24학급	1	1	1	2	5	1	6
		25학급 이상	1	1	1	2	5	2	7
		중 · 고 통합교	전 학교		1	1	1	3	1
	특수 목적고	과학고		1	1	1	4	1	5
		외국어고		1	1	1	4	1	5
		공업고		1	1	1	3	3	9
		체육고		1	1	1	3	3	9
		마이스터고		1	1	1	1	1	5
		※ 중학교 정원 포함							
특수학교	전 학교	1	1	1	1	4	2	6	

* 시설관리 미배치교 인건비 지원, 시설관리는 열관리운영과 통합 운영

안건7. 보직관리 규정 운영 방안 개선 및 개정

주요내용	<p>□ 목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서 발생하는 인사 형평성, 역차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청렴도 제고</p> <p>□ 현황 및 문제점</p> <p>○ 현행 「경상북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관내 전보의 문제점 발생<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외 전보의 원칙은 명확히 제시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전보에 관한 원칙은 시·군단위에서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적재적소의 원칙이라는 추상적인 원칙으로 전보 기간에 각종 민원과 외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2. 많은 지방공무원이 필수보직기간 1년 6개월이 부적정하다고 인식<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전보 필수보직기간 1년 6개월은 공무원들의 근무지 선택권을 침해하여 직업만족도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 ※ 노조 업무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현 필수보직기간(1년 6개월)의 만족도는 긍정답변 38.7%로 낮게 나왔으며, 가장 선호하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60.4%)으로 나옴. 또한, 시·군별 필수보직기간의 선호도 차이는 상관분석결과 없는 것으로 나타남.3. 교육지원청 7급 이하 부서만기의 차별(규정 제13조 ②항 1호)<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의 시 만기(3년), 군 만기(5년) 구분은 결국 시단위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인의 승진기회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군지역 교육지원청 7급은 5년 근속가능)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13조(전보기준)○ 2021년 경북교육노조 업무만족도 설문조사(조사기간:21. 3. 8~19)
----	--

주관부서	총무과
------	-----

□ 불임: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및 설문조사 자료

붙임 1 관련법령 및 설문조사 자료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1., 2009. 9. 21., 2015. 11. 18., 2018. 3. 20.>
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시·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3.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변천

연도	내용	개정사유
1971.4.14.~ 1976.7.19.	(파견근무)	
1976.7.20.~ 1981.6.23.	(전보의 제한) 6개월	
1981.6.24.~ 2015.11.17.	(전보·전출의 제한) 1년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5.11.18.~ 2018.3.19.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1년 6개월	사회복지·재난안전분야 등의 전문성 확보
2018.3.20.~ 현재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2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확대

<설문조사 4번> 현재 1년 6개월(울릉지역 1년)인 필수보직기간에 만족하십니까?

문19 (전체건수 : 1035, 관측건수 : 1035, MISS 건수 : 0)		
5분 척도	빈도	백분율
1. 매우그럴지않다	237	22.9
2. 그렇지않다	245	23.7
3. 보통	152	14.7
4. 그렇다	287	27.7
5. 매우그렇다	114	11.0
TOTAL	1,035	100

<설문조사 7번> 가장 선호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무엇입니까?

문7 (전체건수 : 1035, 관측건수 : 1035, MISS 건수 : 0)		
선호 필수보직기간	빈도	백분율
1. 1년	625	60.4
2. 1년 6개월	342	33.0
3. 2년 이상	68	6.6
TOTAL	1,035	100

Q. 시지역과 군지역 근무자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선호도의 차이가 있나? NO

<설문조사 2> 귀하의 근무지역은? (군지역:328명, 시지역:707명)

<설문조사 7> 가장 선호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문2	문7
문2		0.019
		0.618
		0.537
문7	0.019	
	0.618	
	0.537	
상관계수, Approximately t-Statistics , 양측 검정에 대한 p-value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13조(전보기준) ② 4급 이하 공무원이 동일부서(본청과 교육지원청은 과단위, 그 밖의 기관은 기관단위)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타 직위 또는 타 부서(기관)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7급 이하 공무원이 군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경우 <신설 2019. 12. 26.>

안건8. 시설공사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기술직렬 인력 총원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목적: 학교시설공사 감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제도적 방안 마련 <input type="checkbox"/>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공사 단위사업별 5천만 원 이상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업무대행으로 공사집행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교육청은 지역별 어려운 상황으로 업무대행제도를 실시하지 않음. (예: 구미, 안동)○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기술직 공무원을 즉시 활용하지 못하여 학교시설공사 집행대행의 어려움이 있고,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 총원으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 경감 해소할 필요가 있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학교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업무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시설 공사 준공 후 책임소재 유무가 발생됨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회계전출금 620 예산편성 금지 (석면공사, 교육국 소속 시설공사, 전문성이 필요하는 시설공사 등)○ 학교 시설공사 집행대행방법 세부추진 계획 공문 통보(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기술직렬 공무원 인력 확충으로 학교 시설공사 업무 경감○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학교시설공사 전단팀 신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 요청: 선발예정 인원 비율 축소
	※「제5조(임용인원)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50%이상으로 한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 세부추진계획 통보(재무정보과-7929, 2012.3.27.)○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제50조(학교시설공사지원업무개선)
----	---

주관부서	총무과, 시설과, 행정과, 재무정보과
------	----------------------

불임: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및 논문(연구보고서)
2. 경북교육노조 단체협약

붙임 1 관련법령 및 교육행정에 대한 인식제고 연구보고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 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 세부추진계획 통보(재무정보과-7929, 2012.3.27.)

- 학교에서 발주해야 하는 지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설계, 낙찰자 결정, 감독, 준공검사 등을 직접 시행
 - 교육청 : 설계, 입찰(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 감독, 준공검사
 - 학교 : 계약체결, 대가지급, 사후관리
- ※ 적용대상 학교 시설공사
 - 학교에서 발주해야 하는 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의 학교 시설공사로서
 - 학교회계에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시설공사
 - 교육청(본청,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 받은 시설공사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보조(대응투자사업 포함)받은 시설공사
- 시행일자 : 2012.5.1.부터

구분	학교 시설공사 교육청 대행에 따른 업무 구분
학교	1. 시설공사 예산 확보(설계용역비 포함) 2. 집행계획 수립(시공 규모, 물량, 범위 등) 3. 시설공사(설계용역 포함) 대행 요청(학교→시설지원담당) 4. 낙찰자로 결정 통보된 업체와 시설공사(설계용역) 계약체결 5. 시설공사(설계용역) 준공(완료) 검사 입회 6. 시설공사(설계용역) 대가 지급 7. 시설공사(설계용역) 관련 증빙서류 일체 접수 및 관리(보관)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처리 ◇ 일상감사 수감(※ 일상감사 대상 공사) ◇ 일상감사 수감 결과 제출(학교→시설지원담당, 재정지원담당)
시설지원 담당	1.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에 따른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자체 업무분장, 필요시 세부 행정절차 및 서식 마련 등) 2. 학교 시설공사 대행 요청공문 접수(학교→시설지원담당) 3. 요청된 시설공사 자체 설계 또는 설계용역 발주 여부 검토 4. 설계용역 의뢰 대상 통보 및 용역예산 조치 요구(※ 필요시) (시설지원담당→학교) 5. 시설공사(설계용역) 업체 선정 의뢰(시설지원담당→재정지원담당) 6. 시설공사(설계용역) 감독, 준공(완료)검사, 정산 7. 시설공사(설계용역) 준공(완료)검사 및 정산 결과 통보(시설지원담당→학교)
재정지원 담당	1.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 세부추진계획 수립 통보 (재정지원담당→시설지원담당, 학교) 2. 시설공사(설계용역) 업체 선정의뢰 공문 접수(시설지원담당→재정지원담당) 3. 낙찰자 선정방법 결정(입찰, 공개경쟁, 수의계약) 4. 입찰 진행 5. 낙찰자 선정(낙찰예정자 적격심사, 결격여부 검토 등) 6. 낙찰자 결정 통보 및 계약체결 안내 (재정지원담당→시설지원담당, 학교, 낙찰 업체)

4. 박두익 외(2017). 학교조직 내 교육행정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연구. 경상북도교육행정세움연구회 연구보고서(p102~p103)

<표19> 교육행정 업무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어느 분야인가?(n=493)

문항 11의 답변	빈도(명)	백분율(%)
① 예산 및 결산 업무	110	22.31
② 계약 관련 업무	184	37.32
③ 시설공사 관련 업무	153	31.03
④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3	0.61
⑤ 교육실무직원 관련 업무	30	6.09
⑥ 기타	13	2.64
TOTAL	493	100

⇒ 문항 10에서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를 답한 교육행정인은 565중 493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질문에서는 계약 관련 업무가 가장 높았으며(37.32%) 그 와 비슷하게 시설공사 관련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답하였다. 그 뒤를 예·결산 업무와 교육실무직 업무 등이 뒤따랐다. 기타 의견으로는 물품, 징수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

<표22> 교육행정인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는?(n=529)

문항14의 답변	빈도(명)	백분율(%)
① 예산 및 결산 업무	29	5.48
② 계약 관련 업무	72	13.61
③ 시설공사 관련 업무	205	38.75
④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33	6.24
⑤ 교육실무직원 관련 업무	178	33.65
⑥ 기타	12	2.27
TOTAL	529	100

⇒ 교육행정인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는 시설공사 관련 업무(38.75%)였다. 시설 공사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복잡한 공정 그리고 감사와 관련한 주요 업무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뒤를 이어 요즘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업무인 교육실무직원 관련 업무가 33.65%로 기피 업무로 선정이 되었으며 계약관련업무와 예·결산 업무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 2 경북교육노조 단체협약

경북교육노조 단체협약 제50조(학교시설공사지원업무개선) ①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 공사 업무 지원을 위한 서포터제를 활성화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2,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전담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시설직공무원의 연차적 충원·배치 노력을 함으로써 행정실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기타)

노사협의 만족도조사 설문 분석

(작성일: 2021. 4.)

본 설문분석 자료는 2021년 3월 8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노조원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내용이며, 분석도구는 유레카 E-STAT 2.0,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 문항별 설문 분석

문항1) 귀하의 성별은?(N=1,035)

성별	빈도	백분율
남자	423	40.87
여자	612	59.13
합계	1,035	100

문항2) 귀하의 근무처는?(N=1,035)

근무처	빈도	백분율
유초중	537	51.88
고	122	11.79
교육행정기관	376	36.33
합계	1,035	100

문항3) 귀하의 근무지역은?(N=1,035)

근무처	빈도	백분율
군지역	328	31.69
시지역	707	68.31
합계	1,035	100

○ 2019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필수보직기간(한 기관 최소 근무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 4~문항7)

문항 4(N=1,035)

현재 1년 6개월(올통지역 1년)인 필수보직기간에 만족하십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37	22.90
그렇지 않다	245	23.67
보통	152	14.69
그렇다	287	27.73
매우 그렇다	114	11.01
합계	1,035	100

⇒ 현재 필수보직기간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 4’는 부정적인 견해가 61.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필수보직기간(2년) 설문조사¹⁾ 시 불만족도 90.22%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문항 5(N=401)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척도	빈도	백분율
기관적응 및 역할 수행에 적절한 기간이라 생각	247	61.59
전문행정 수행에 적절한 기간이라 생각	23	5.74
1년은 짧고, 2년 이상은 길다	130	32.42
기타	1	0.25
합계	401	100

⇒ 현재의 필수보직기간을 만족하는 401명은 기관적응에 적절한 기간이라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1년과 2년의 중간 지점의 기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문항 6(N=632)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척도	빈도	백분율
필수보직기간 1년이 더 적절	569	90.03
필수보직기간 2년 이상이 더 적절	38	6.01
학교 적응 기간이 짧음	13	2.06
기타	12	1.90
합계	632	100

⇒ 현재의 필수보직기간을 만족하지 않는 632명 중 90.03%가 필수보직기간 1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2년 이상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은 6.01%에 그쳤다.

문항 7(N=1,035)
가장 선호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무엇입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1년	625	60.39
1년 6개월	342	33.04
2년 이상	68	6.57
합계	1,035	100

⇒ 문항 4, 5, 6과 관련하여 가장 선호하는 필수보직기간을 묻는 설문에서는 여전히 1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0.39%였으며, 1년 6개월이 33.04%, 2년 이상이 6.57%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필수보직기간을 6개월 더 단축하는 것이 노조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의견에 대하여 도교육청 인사부서에서는 군지역 인사의 애로점(잦은 인사변동)을 이야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Q. 시·군지역 근무자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선호도의 차이가 있나? NO

<설문조사 3> 귀하의 근무지역은? (군지역:328명, 시지역:707명)

<설문조사 7> 가장 선호하는 필수보직기간은?

<상관분석>	근무지역	선호 필수보직기간
근무지역	1	
선호 필수보직기간	0.019 ²⁾	1

1) 2019. 6. 14(금)~18(화) 기간 동안 노조원 1,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문항 3’와 ‘문항 7’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상관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필수보직기간 선호도와 균무지(시군)에 따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군지역에서 더 긴 필수보직기간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 2019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자율연수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8~문항10)

문항 8(N=1,035)
2020년 자율연수경비를 사용하셨나요?

척도	빈도	백분율
사용	573	55.36
미사용	462	44.64
합계	1,035	100

⇒ 설문에 의한 자율연수경비의 사용은 55.36%로서 거의 절반의 인원이 사용하였다. 좀 더 높은 사용을 위해 꾸준한 홍보와 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9(N=1,035)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율연수경비 금액(200,000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16	11.21
그렇지 않다	133	12.85
보통	357	34.49
그렇다	323	31.21
매우 그렇다	106	10.24
합계	1,035	100

⇒ 자율연수경비 금액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답변 41.45%, 부정답변 58.55%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연수경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10(N=1,035)
자율연수경비 인정범위(직무관련)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83	17.68
그렇지 않다	251	24.25
보통	298	28.79
그렇다	224	21.64
매우 그렇다	79	7.64
합계	1,035	100

⇒ 자율연수경비 인정범위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답변 29.28%, 부정답변 70.72%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정범위의 확대(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사서직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11~문항12)

문항 11(N=1,035)
사서직률 여부

척도	빈도	백분율
사서직렬이다	54	5.22
사서직렬이 아니다	981	94.78
합계	1,035	100

2) 상관계수값(r)과 상관성 정도

±0.9이상: 매우 높은 상관관계
±0.2~0.4미만: 낮은 상관관계

±0.7~0.9미만: 높은 상관관계
±0.2미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0.4~0.7미만: 다소 높은 상관관계

문항 12(N=54)
(10번 문항에서 사서직률 선택 시) 주말 일용인부임금 예산 편성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4	7.41
그렇지 않다	3	5.56
보통	8	14.81
그렇다	16	29.62
매우 그렇다	23	42.60
합계	54	100

⇒ 인력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긍정답변이 72.22%로 높게 나와 처우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 2019년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시설관리직률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13~문항15)

문항 13(N=1,035)
시설관리직률 여부

척도	빈도	백분율
시설관리직이다	102	9.86
사서관리직이 아니다	933	90.14
합계	1,035	100

문항 14(N=102)
(13번 문항에서 시설관리직률 선택 시) 2020년, 2021년에는 학교회계 예산에 외부용역비가 편성되어 시설관리업무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2	21.57
그렇지 않다	16	15.69
보통	30	29.41
그렇다	23	22.55
매우 그렇다	11	10.78
합계	102	100

⇒ 시설관리업무 개선을 묻는 설문에 긍정답변 33.33%, 부정답변 66.67%로 나타나 학교단위에서 예산확보 및 시설관리직 중심의 업무 집행 방안 모색 등이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문항 15(N=102)
(13번 문항에서 시설관리직률 선택 시) 시설관리직률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업무 교육훈련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41	40.20
그렇지 않다	25	24.51
보통	19	18.62
그렇다	13	12.75
매우 그렇다	4	3.92
합계	102	100

⇒ 시설관리직률 교육훈련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긍정답변 16.67%, 부정답변 83.33%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관리직률에 대한 연수프로그램개발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 제1차 및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실시된 **교육행정기관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16~문항20)

문항 16(N=1,035)
교육행정기관 근무 여부

척도	빈도	백분율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다	374	36.14
교육기관(초,중,고)에 근무한다	661	63.86
합계	1,035	100

문항 17(N=374)
(16번 문항에서 교육행정기관 근무 선택 시)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쉬고 있습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0	8.02
그렇지 않다	27	7.22
보통	78	20.86
그렇다	122	32.62
매우 그렇다	117	31.28
합계	374	100

⇒ 토, 공휴일 숙직 근무 후 휴무실시에 대해서는 36.10%가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90%가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하였으며,

문항 18(N=374)
(16번 문항에서 교육행정기관 근무 선택 시) (17번 문항에서 부정답변 시)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업무가 바빠서	143	38.24
상급자의 눈치	67	17.91
규칙개정 알지 못함	16	4.27
기타	148	39.58
합계	374	100

⇒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타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숙직을 하지 않는 여성공무원과 기관근무자의 답변이었다. 이를 배제하고 판단해 본다면 가장 큰 원인은 업무가 바빠서 그 다음으로는 상급자의 눈치 순으로 나타났다.

많았는데 그 이유는 숙직을 하지 않는 여성공무원과 기관근무자의 답변이었다. 이를 배제하고 판단해 본다면 가장 큰 원인은 업무가 바빠서 그 다음으로는 상급자의 눈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19(N=374)
(16번 문항에서 교육행정기관 근무 선택 시) 일직근무자(토,일,공휴일)들이 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것이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에 적절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5	4.01
그렇지 않다	22	5.88
보통	42	11.22
그렇다	101	27.01
매우 그렇다	194	51.88
합계	374	100

⇒ 일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실시에 대한 설문에는 긍정답변이 78.89%로 높게 나왔으며, 부정답변은 21.11%에 그쳤다. 여성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체휴무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척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0	2.67
그렇지 않다	16	4.28
보통	30	8.02
그렇다	90	24.06
매우 그렇다	228	60.97
합계	374	100

⇒ 교육행정기관 기관학습휴가에 대한 긍정답변은 85.03%로 아주 높은 비율로 찬성을 하였으며, 이는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학습휴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